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신 교 선 위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기 획 실 장)	일 자	질의 : 2001년 6월25일 답변 : 2001년 6월25일
회 의	제86회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예결특위		
<p>【질의요지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 국·도비 보조금 반환 사유</p>			
<p>【답변요지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 국·도비 보조금 반환 사유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: 불 임</p>			

국 · 도비반환금 관련

□ 사업명 : '99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

□ 사업비 : 250,000천원(국비50,000 도비 50,000 용자 100,000 자부담 50,000)

□ 사업량 : 축사1동, 퇴비사 1동, 집하장 1동, 비가림운동장 1동, 장비 1종

□ 보조사업자 : 진부면 두미울 2리 두미울 작목반(반장 : 유명수)

□ 보조사업 취소사유

- 두미울작목반에서 '99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중 시공자(제천시 봉방동 호성건설(대표:김진옥))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사업중단에 따라 보조사업 취소

□ 취소경위

-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을 위해 두미울작목반에서는 당초 호성건설(제천시 봉방동, 대표 김진옥)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사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로 있던 중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,
- 2차로 제천시 장락동 우성기술상사(대표 박춘훈)와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이또한 사업추진이 안되어 다시 3차로 호성건설과 재계약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.
- 이에따라 두미울 작목반에서는 계약조건위반으로 간주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.
- 군에서는 본 사업이 '99년도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완되어 2001. 1. 13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음.
- *현재, 도급업자인 박승규, 박춘훈, 이해구 등이 채무자로 유명수, 제3채무자인 평창군수를 상대로 보조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해 놓았으나 평창군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임.